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항만위원을 모집합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1명

2. 임기 : 2년(직무수행평가 및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 아래 표기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 「인천항만공사 정관」 제24조(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인 지원자는 반드시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응모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참조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4.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4. 전형방법 : 서류 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추천여부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지정양식) 1부
- 정당 미가입 확인서(지정양식) 1부
- 서약서(지정양식)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 * 제출서류 양식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지원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6.06.25.(목) 10:00부터 ~ '26.07.09.(목) 18:00 까지
- 제출처 :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 34층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 * 담당자 연락처 : 032-890-8034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 E-mail, Fax 접수는 불가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7. 보수수준 : 공사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참석수당 지급

8. 기 타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개 모집 결과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에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후보자 추천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전자메일(newbee@icpa.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도달 후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지원서 양식과 우리공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icpa.or.kr)를 이용하시거나,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 032-890-8034, 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